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**제4조(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특례)** 제5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)** 제5조의11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공표한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제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.

**제6조(별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**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.